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을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이 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 정신보건법이 '97. 12. 31 전문개정(법률 제5486호)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구청장의 권한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코자 함

2. 주요골자

-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 “정신보건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로서의 권한 사항” 삽입
-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 사회복지과 소관 “행여사망자 처리”를 삭제
 - 경제과 소관 “농지취득 자격증명”과 “농자자경증명 발급”은 유덕동과 서창동에만 위임
 - 농지원부 작성관리 및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업무는 현행대로 존치

3. 검토보고

-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조정 정비하여 규정수행 등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익을 위한 것으로
- 정신보건법 제21조의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는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였으며
-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행여사망자 처리”를 삭제하여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자경증명발급”은 농촌지역인 유덕동과 서창동에만 현행대로 위임하고 그 외 동은 경제과로 이관하여 구조조정으로 인한 동사무소의 정원 감축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됨에 따른 사무를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임사무를 조직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농지원부 작성관리 및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업무는 동에 그대로 두면서 이와 직접 관련이 있고 민원건수가 많지 않으며 주민들이 구청까지 오는 불편이 있어 농지취득 자격증명과 농지자경증명 발급업무는 경제과에서 취급하는 것보다 당초대로 11개 동에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지침대로 시범 실시 기간인 2000년 6월까지 시행 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